

김포도시관리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3405호
----------	--------

제출년월일 2024. 2. .
제출자 김포시장

1. 제안이유

- 타 시·군 지방공사는 「지자체명+도시공사」 명칭을 대다수 사용하고 있음
- 김포도시관리공사 명칭 변경을 통해 대외이미지 제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사 명칭 변경에 따른 조례 제명 변경(안 제명)
 - 공사 명칭 변경 : 前) 김포도시관리공사 → 後) 김포도시공사
- 공사 명칭 변경에 따른 조항 문구 정비(안 제1조 ~ 2조)
-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및 다른 조례의 개정을 명시(부칙)

3. 참고사항

- 가.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 나. 관계 법령 및 현행 자치법규 : 붙임
- 다. 예산사항 : 해당 없음
- 라. 그 밖의 사항
 - 1)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24. 2. 6. ~ 2. 16. (10일)
 - 나) 예고결과 : 의견 있음(붙임)
 - 2) 부서협의
 - 가) 규제사전심사 : 해당 없음
 - 나) 성별영향평가 : 원안 동의
 - 다) 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
 - 3) 중앙 및 도 관련부서

가) 중앙부처 :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정책과, 지방공공기관관리과

나) 경 기 도 : 공공기관담당관

김포도시관리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도시관리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김포도시관리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를 “김포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김포도시관리공사”를 “김포도시공사”로 한다.

제2조 중 “김포도시관리공사”를 “김포도시공사”로, “김포도시공사가 김포 시시설관리공단을 합병하여 설립된 법인”을 “법인”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의 김포도시관리공사는 이 조례에 따른 김포도시공사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김포도시관리공사의 임원 및 직원은 각각 이 조례에 따른 김포도시공사의 임원 및 직원으로 본다.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이 조례 시행 당시 김포도시관리공사의 명의로 행한 행위, 그 밖의 법률 관계에 있어서 김포도시관리공사는 김포도시공사로 본다.

④ 이 조례 시행 당시 등기부, 그 밖의 공부상에 표시된 김포도시관리공사의 명의를 이 조례에 따른 김포도시공사의 명의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김포시 안전관리위원회·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4호 중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을 “김포도시공사사장”으로 한다.

② 김포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다

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중 “김포도시관리공사” 를 “김포도시공사” 로 한다.

③ 김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중 “김포도시관리공사” 를 “김포도시공사” 로 한다.

④ 김포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2호 중 “김포도시관리공사” 를 “김포도시공사” 로 한다.

⑤ 김포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김포도시관리공사” 를 “김포도시공사” 로 한다.

제10조 중 “김포도시관리공사” 를 “김포도시공사” 로 한다.

⑥ 김포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2제1항 중 “김포도시관리공사” 를 “김포도시공사” 로 한다.

⑦ 김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5호 중 “김포도시관리공사” 를 “김포도시공사” 로 한다.

소관 실·과·소		예산과
입 안 자	실·과·소장 성 명	예산과장 조 은 정
	담 당 성 명	경영분석팀장 신 영 옥
	담 당 자 전 화	지방행정주사보 배 명 선(☎2042)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김포도시관리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u>김포도시관리공사</u>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법인격) <u>김포도시관리공사</u>(이하 “공사” 라 한다)는 <u>김포도시공사가 김포시시설관리공단</u>을 합병하여 설립된 <u>법인</u>으로 한다.</p>	<p><u>김포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u></p> <p>제1조(목적) ----- ----- -- <u>김포도시공사</u>----- ----- -----.</p> <p>제2조(법인격) <u>김포도시공사</u>----- ----- <u>법인</u>----- ----- -----.</p>

김포도시관리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김포도시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김포도시관리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김포도시공사가 김포시시설관리공단을 합병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한다.

제3조(자본금) ① 공사의 수권자본금은 정관으로 정하고,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가 전액을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다만, 공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 이외의 자로 하여금 출자 또는 증자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의 납입시기와 방법은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제4조(주식의 발행) ① 제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은 주식으로 분할하여 발행한다.
② 공사의 주식은 보통주로 발행한다.
③ 주권은 1주권·5주권·10주권·50주권·100주권·500주권·1,000주권으로 구분하여 발행한다.
④ 공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5천원으로 한다.
⑤ 주식 발행의 시기, 발행 주식의 총수와 주금(株金)의 납입시기 및 납입방법은 공사의 이사회 결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정관) 공사의 정관은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6조(이사) 공사의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하되, 당연직 비상임이사는 시의 도시 업무부와 예산 또는 회계 업무부서의 국·과장 중에서 각 1명으로 한다.

제7조(임원의 대표권 제한) 공사의 이익과 공사의 사장(이하 “사장”이라 한다)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

는 이사는 공사를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제8조(비밀누설금지 등) 공사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이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이사회에의 참여제한) 공사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할 경우에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제10조(사업) 공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1. 토지개발 등을 위한 토지의 취득·비축·개발 및 공급·임대관리
2. 주택 및 일반건축물의 건설·개량·공급·임대 및 관리
3. 관광지·리조트 등 위락단지,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4. 도로·도시철도 등 교통관련시설의 건설 및 유지관리
5. 건설자재의 생산 및 공급
6. 체육시설의 조성 및 관리
7. 시가 설치한 각종시설 및 시설물 위탁관리
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행 또는 위탁한 업무
9.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자된 자산의 임대 및 관리
10.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행한 사업의 추진 및 관리
11.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에 부수되는 설계용역 및 감리 등의 업무
12. 그 밖의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와 관련되는 공공성과 수익성이 있는 경영수익사업

제11조(사업구역) 공사의 사업구역은 시 일원으로 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 외의 지역에서도 사업을 할 수 있다.

제12조(예산 및 결산) ① 사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미리 시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에 재의결을 얻어야 한다.

③ 시장은 결산서에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13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및 수입금의 처리) ① 공사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시장의 승인을 얻어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법 제71조제2항에 따라 공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경비
2.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의 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평균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급부에 대한 평균공급가격과 실제 공급가격의 차액

③ 제2항제2호의 경비부담에 관하여 공사는 해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 단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입금은 시의 각 회계로 세입 조치할 수 있다.

제14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① 시장은 공사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에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대부(“무상사용 수익”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다만,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공사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15조(기금의 조성) ① 사장은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시장의 승인을 얻어 공사에 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16조(사채의 발행 등) ①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공사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채를 발행하거나 외국차관을 할 수 있다.

② 시는 사채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③ 사채의 발행·매각 및 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7조(자금차입) ① 공사는 예산의 지출에 있어서 현금이 부족한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자금을 일시 차입할 수 있으며, 그 차입한도는 예산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차입금은 해당 회계 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18조(선수금) ① 공사는 공사가 조성하는 재산을 분양받거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 또는 용역을 제공받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선수금을 받을 경우에는 그 납부방법과 시기 등에 대하여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9조(감독 및 감사) ① 시장은 공사의 사무를 감독하며, 필요한 경우에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예산의 편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임·직원의 인사규정과 보수규정(연봉제규정·복리후생규정을 포함한다) 및 퇴직금규정(명예퇴직규정을 포함한다) 등 중요한 규정의 제·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감독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괄부서의 장”이란 공사의 제도, 위원회, 성과계약서, 경영실적·진단, 재무 및 출자 등 공사의 설립 및 운영 전반의 사무에 대하여 지도·감독하는 부서의 장
2. “사업부서의 장”이란 공사의 사업과 관련된 사무에 대하여 지도·감독하는 부서의 장

제20조(검사 등) 시장은 공사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제21조(성과평가 등) ① 시장은 공사의 정책, 사업 추진성과 등에 대하여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성과평가 계획에 따라 공사는 각종 평가 자료를 제공하고 평가에 응해야 한다.

② 시장은 성과평가 결과를 사장의 연봉, 성과급, 인사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사장은 소속 직원의 연간 성과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성과급, 인사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2조(업무상황의 공표) ① 사장은 사업연도마다 2회 이상 공사의 업무상황을 설명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사장은 결산서·재무제표·연도별 경영목표·경영실적의 평가결과·기타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지역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제23조(권한의 위탁) 시장은 공사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권한의 일부를 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24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사장의 요청에 의하거나 공사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25조(파견공무원의 인사평정·관리) 공사에 파견된 공무원에 대한 인사평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의하여 시의 각 부서와 동일하게 평정 관리한다.

제26조(공인의 비치) 공사는 위·수탁사무를 자신의 명의로 처리하기 위한 공인을 시장의 승인을 얻어 「김포시 공인 조례」에 준하여 비치·사용할 수 있다.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경기도 시·군별 지방공기업 현황

공 기 업 명 (31개)	
수원도시공사	고양도시관리공사
용인도시공사	김포도시관리공사
부천도시공사	광주도시관리공사
안산도시공사	
안양도시공사	성남도시개발공사
남양주도시공사	파주도시관광공사
화성도시공사	구리농수산물공사
평택도시공사	
시흥도시공사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
광명도시공사	오산시시설관리공단
군포도시공사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양주도시공사	가평군시설관리공단
여주도시공사	연천군시설관리공단
구리도시공사	이천시시설관리공단
포천도시공사	
의왕도시공사	
하남도시공사	
과천도시공사	
양평공사	

입법예고 의견 및 검토결과

제출자	내 용	검토결과
김포도시 관리공사 노동조합	○ 명칭을 변경하였을시 김포시 및 김포도시관리공사의 이미지가 부각되는지 의문	○ 미수용 - 김포도시관리공사에서 김포도시공사로의 명칭 변경은 경기도 대부분의 지자체(19개)에서 “지자체명+도시공사”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어 통일성을 기하는 것이 대민 홍보차원에서 용이할 수 있으며, 각종 개발사업의 보다 적극적인 추진을 위한 이미지 개선으로 공사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임
	○ 명칭 변경에 따른 막대한 예산 투입이 맞는것인지 의문(김포시 예산 부족의 삭감에 역행하는 행정)	○ 미수용 - 김포도시관리공사는 2024년 4월 청사이전계획으로 새로운 현판과 주소 등 각종 홍보물 변경이 필요하며, 이에 선제적으로 공사 명칭을 변경함으로써 향후 별개 추진 시보다 오히려 예산절감효과가 있음. 또한 예산편성 협의 시 최소한으로 편성하겠음.
	○ 명칭 변경은 전혀 명분이 없으며 - 당초 김포도시관리공사에 관리가 들어간것에 대해서는 2011년 이명박정부 시절 공기업선진화 방안에 따라 공단·공사 강제 통합에 따라 통합을 하였을 시 명칭을 김포도시공사로 하였으나, 우리 노조에서 이의를 제기했고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가 - 2017년 공사를 청산하는 조건으로 공단·공사 분리후 2020년 1지자체 1공기업에 따라 공사를 청산하지 않고 재 통합하는 과정에서 우리 노조는 경기도청에 통합반대 집회를 하려고 하였으나 김포시에서 자체 요청이 들어와 집회를 철회하였으며, 이후 협의하는 과정에서 통합 시 명칭에 관리를 빼면 시설관리공단이 오히려 청산대상이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고 400여명의 조합원들도 반대를 하였기에 명칭을 김포도시관리공사로 한 것임. - 따라서 명칭 변경은 절대로 불가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 미수용 -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대시민 서비스증진 등을 위한 공공복리증진을 추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김포도시관리공사노동조합의 시설관리공단이 청산대상이라는 느낌이란 사유 등으로 명칭변경 불가 의견”은 타당하지 않음